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 안	25-117
번 호	관련

발의년월일 : 2025. 10. 23.

발 의 자 : 권영숙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 기준을 현실화하고,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사항 중 수혜가능한 주차장 범위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유공납세자 선정기준 현실화(안 제2조제2호나목)

나.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사항 확대(안 제4조제2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, “3백만원”을 “5백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공영주차장”을 “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”으로 한다.

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유공납세자"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, 이하 같다)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<u>1천만원</u> 이상, 개인은 <u>3백만원</u> 이상인 납세자 중 제3조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	나.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 ----- <u>5백만원</u> ----- ----- -----
제4조(우대 및 지원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우대 및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구가 운영하는 <u>공영주차장</u> 주차요금 1년간 면제	2. ----- <u>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</u> -----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